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KRX
한국거래소

보도	2025.1.20.(월) 조간	배포	2025.1.17.(금)		
금융감독원	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임권순	(02-3145-7580)
	공매도특별조사단	책임자	실 장	박재영	(02-3145-5630)
	공매도전산화TF	담당자	수 석	안항환	(02-3145-6891)
한국거래소	공매도특별감리부	책임자	부 장	우민철	(02-3774-9250)
	주식시장부		부 장	안일찬	(02-3774-8580)

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하여 공정·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

- 「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」 등 개정 사전예고 및 「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」 배포 -

[주요 내용]

□ **(개요)** 공정·투명한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,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①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하여 법인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
- ②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
- ③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
- ④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(NSDS)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

□ **(기대효과)**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 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, 동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3월말까지 완성하겠습니다.

○ 규제 명확화* 및 실무 적용성** 제고를 통해 잔고관리시스템의 자체 예방 기능 및 NSDS 탐지 기능 강화가 예상되며,

* 기존 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시행세칙화 ** 사례, 질의·응답 등 활용

○ NSDS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.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- 금융당국은 공정·투명한 공매도 규제체계 확립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*을 추진하면서

* 자본시장법 개정(‘24.10.22.)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完(‘24.12.31.)

- 규제체계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행정지도*를 시행(‘24.8.21.)하고,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(안)을 배포(‘24.9.25.)

* 금감원 행정지도(행2024-11002): ①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, ②기관내 잔고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, ③공매도 주문 위탁 증권사 점검 체크리스트

◆ 행정지도 내용을 시행세칙화 하는 등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, 실무 적용성을 높인 가이드라인(국·영문) 최종안을 배포합니다.

II. 시행세칙 및 가이드라인 보완 주요 내용

시행세칙 주요 내용	가이드라인 보완 주요 내용
① 공매도 법인 내부통제기준	① 내부통제기준
[§4-4, 별표 35] 내부통제기준 세부사항	대상법인 및 주요내용 안내
②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	②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
[§4-6] 증권사 자체점검기준 마련·운영 의무 및 점검방법 [별표 36] 점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점검항목	점검기준, 확인방법, 확인주기 및 보고방법 안내
③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	③ 등록번호 발급
[§4-5]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단위 및 발급·변경·폐기 절차	발급대상 및 발급단위 등 안내
④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잔고 등 정보제출	④ 잔고 등 정보제출
[§4-7] 공매도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종목별 잔고 및 거래내역을 거래소에 T+2영업일까지 제출	주요내용 및 위반시 책임 안내

① **(내부통제기준 차등화)**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

< 내부통제기준 세부사항 >

구분	대규모 공매도 법인 (공매도 보고의무* 발생 or MM·LP)	소규모 공매도 법인	사전입고 후 공매도 법인
공통	①(업무분장) 공매도 수행 임직원의 역할·책임 명확화 ②(모니터링) 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에 의한 공매도 법규 준수 모니터링 ③(자체조치) 위반 발견시 임직원 제재, 내부통제개선 실시, 금감원 통보 등 조치 ④(자료보관) 내부통제 활동 세부내역의 5년간 보관		
차등	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	공매도 업무규칙 마련	약식 업무규칙
세부내용	<시스템 요구사항> •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 • 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 • 수기수정시 통제장치 마련 등 <시스템 운영기준> • 권한없는 자의 접근 제한 • 오류 발생시 공매도 중단 등	• 주문전 법률준수 여부 사전검토 및 사후검증 • 주문시 주문정보 기록·관리 • 주문전후 매도가능잔고 등 산출 • 매도가능잔고에 정외거래 신속 반영 • 잔고초과주문 차단절차 마련 등	-

* 공매도 잔고 0.01% 또는 10억원 이상

※ (가이드라인) '25.3.31.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는 존재하나 3.31. 이후 공매도 거래 의사가 없는 법인은 전산설비 구축 및 거래소 잔고정보 등 제출 의무가 없음

② **(증권사 확인의무 내실화)**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내실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등을 명시

- (항목)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, 업무분장의 명확성,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*

*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도 차등적으로 규정

- (방법) 직접 점검이 원칙이나,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 점검*도 허용

* 공매도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수탁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

- **(주기)**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,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
- **(보고)**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

※ (가이드라인) 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을 받고 사전계좌대체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이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로 한 경우, 사전에 동 시스템의 구축요건 및 운영요건 등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을 받고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함

③ (투자자 실체성 검증)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(신청방법 및 전산처리 프로세스) 마련

- **(발급대상)**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*
 - * 공매도 잔고가 0.01%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MM(시장조성)·LP(유동성 공급)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(단,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제외)
- **(발급단위)** 법인 단위별 발급이 원칙
 - **(독립거래단위)**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시 독립거래단위별 발급
 - **(MM·LP)** MM·LP 거래를 위해 구분 개설한 계좌별로 발급
 - **(투자자 재산)** 일임·신탁 등 투자자 재산별*로 발급
- * 다만, ①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증권사에 통보하고, ②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증권사 전산조치 완료한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④ (NSDS와의 정보 연계)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정보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

- **(대상)** 법인이 보유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
- **(기한)**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 2 영업일 內 제출

Ⅲ. 거래소 규정 주요 내용

- ① (시장감시규정) NSDS 제출 정보의 정보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
- (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) NSDS 보고 방법 관련 구체적인 정의를 위해 보고서식, 보고기한 등 명시

< NSDS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>

NSDS 보고방법			거래소의 확인요구	
보고서식	[§13-3①, 별지14-2]	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보고서	확인요구에 대한 답변	
보고단위	[§13-3②]	공매도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고	[§13-3③, 별지 14-3]	사실관계확인서
보고대상	[§13-3②]	보유하고 있는 쏜종목	제출기한	
보고기한	[§13-3②]	T+2일 장종료후 지체없이	[§13-3⑥]	요구받은 날로부터 7거래일
보고방법	[§13-3③]	NSDS에 지정된 전자통신방식		

- ② (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*) 증권사에 주문 수탁시 공매도 등록 번호 확인 및 호가 제출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를 부과

*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,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IV. 기대 효과

- **(규제 명확성↑)**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시행세칙에 명문화하여 규제 명확성 제고
- **(실무 적용성↑)** 공매도 규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례, 질의·응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여 실무 적용성 향상
 - 영문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외국인의 규제 이해도를 증진
- **(운영 실효성↑)** NSDS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이 증대

V. 향후 계획

- **(시행세칙 등 개정)**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1.31일까지*이며, 이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'25.3월까지 개정을 완료
 - * 시장감시규정 등 거래소 규정 사전예고 기간은 1.24
- **(시장소통 강화)**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
 -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의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(1월)
 -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토론회 개최 예정(2월)
 -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 개최 예정(3월)

- ※ <별첨1>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
- <별첨2> 시장감시규정 등 5개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
- <별첨3>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(국문)
- <별첨4>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(영문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